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범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46

발의연월일: 2025. 1. 24.

발 의 자: 박범계·채현일·부승찬

추미애 · 장종태 · 권칠승

정을호 · 이개호 · 김기표

조승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방부, 병무청,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일 반직공무원, 교육공무원 및 경찰공무원,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 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역 군인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음.

그러나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원으로는 보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, 군무원 정책 등의 수립에 있어서 정작 군무원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방부,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이 군무 원으로 보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군무원의 영역 보장 및 정책에 의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6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항제3호 중 "현역군인"을 "현역군인 및 군무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	제2조(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
직 등) ① ~ ⑤ (생 략)	직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	6
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	
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	
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	
• 특정직공무원(경찰공무원 및	
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) 또는	
별정직공무원으로 보(補)하되,	
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	
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	
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	
있다. 다만, 별정직공무원으로	
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	
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.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국방부, 병무청 및 방위사업	3
청: <u>현역군인</u>	현역군인 및 군무원
4. • 5. (생 략)	4. • 5. (현행과 같음)
⑦ ~ ⑩ (생 략)	⑦ ~ ⑩ (현행과 같음)